낙원중 3학년 사	회 학습지	3학년 ()반 ()번	이름	: ()	
오늘의 배움 단원	Ι,	인권과 헌법	בת	서는 어	47			
오늘의 배움 주제			대한민국	헌법	알아보	기		
이번 시간 목표	대한민국 *	헌법의 내용을 알					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1. 대한민국 헌법 살펴보기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븁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에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교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1조	① 대한민국은 ()이다.② 대한민국의 ()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중립성은 준수된다.
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조	① 공무원은 ()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이며, ()는 보장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긴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칭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T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충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2조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륨 가진다.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26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①모든 국민은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제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항따라 또는 항피고인으로서 구금다었던 자가 법을이 장하는 날이 소세요을 받아나 무진걸을 받은 때에는 법들이 장하는 비에 의하며 국 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몽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약신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농억에 따라 균통하게 교육유 받유 권리뷰 기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유 가진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항상유 위하여 자주적인 단겁권·단세교신권 및 단체행동권유 가진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유 및 권리를 기진다. ▼ 제35조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한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한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36조(D호는 국선은 건강하고 돼지한 한강에서 생활할 전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선은 한강호전을 위하여 보여하여 한다. 지36조(D호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병통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지37조①국민의 자유의 권리는 언법에 일기되지 아니인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인다. ⑦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뮴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류로써 제한합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유 상해할 수 없다.
│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세의 의무류 진다. │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의의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붉이익한 서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1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습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지42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제판소 제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한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TO SE STET - THOSE WINTER TO BE THE THE THE THE THE THE THE THE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충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몽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몽링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전기에 된던 사용은 법률로 경인다. □ 제68조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함 수 없다.
•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지 12년 국구 3 국구 기년 지 2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율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3관 행정각부
제 3년 영경국구 지 34조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몽링이 임명한다.
기계의소등 경식부터 당한 식무류는 당에서 식무당되며 제공으로 대통하여 담당한다. 기계의 조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96조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4관 감사원
□ 제97조국가의 세입·세슐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음 둔다.
제5장 법원
지 101조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 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틴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술하는 자음,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u>:</u>
제130조⊕국회는 헌법개정인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인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물 공포하여야 한다.
868, 106 - 1 10 0-1 COU CC - 11 11 C CO. 11 0 C - 11 10 0 C - 11 10 0 C - 11 1 C-1